

의안번호	2201002
의 퇴 인	김도읍의원
회 답 일	2024.08.19.
추계번호	24C135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의3 (마약류관리기본계획)	○ 기본계획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내용 추가 － (참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제1항·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및 생활 지원을 위하여 마약류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례 관리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2	안 제51조의3제1항 (마약류 중독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1항) 1.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호·교육·상담 및 홍보 사업 2.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생활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3	안 제51조의3제2항~제4항 (마약류 중독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체계적·효율적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마약류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제2항)	의무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활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조의3 (마약류관리기본계획)	×	○ 기시행 사업
2	안 제51조의3제1항 (마약류 중독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	
3	안 제51조의3제2항 (마약류 중독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안 제2조의3) 기본계획의 범위 확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존 연구용역비로 수행이 가능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년 수립하는 관리계획은 기관의 기본경비로 수행 가능한 것으로 가정
 - 국무조정실은 “제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2025~2029년)” 수립을 위해 2024년 기준 1억 5,000만원 예산을 배정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구는 마약류 중독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복귀 등 개정안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
- (안 제51조의3제1항) 개정안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를 지원하는 사업은 기시행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상담-재활을 지원하는 한걸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2024년 기준 예산 101억 6,300만원을 배정하였음
 - 구체적으로, 한걸음센터 운영비와 14개소 신규 설치비로 73억 3,500만원,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등에 7억 8,600만원, 1342한걸음센터(콜센터) 구축 및 운영비로 20억 4,200만원 등을 배정

2. 상세 사유

□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51조의3제2항)

- 개정안은 마약중독자의 체계적·효율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법 제11조의3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관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를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됨
 - － 개정안은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현행법 제51조의2제2항의 정보들과 연계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범죄경력자료,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관련 정보, 마약류사범의 교육 이수실적 등으로, 이 경우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신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비용은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투입 인원의 수와 개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시스템 구축 규모나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범위, 개발 난이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소요 비용을 추계하기에 한계가 있음
 - －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은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직무별 투입 인력의 수와 투입 기간, 평균 임금 등을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산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필요 경비와 기술료 등 부대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추계
 - －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 구축 완료한 정보관리시스템 및 전국적 통합시스템을 통해 재활사업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일부 가능함. 다만, 향후 권역별 중독재활센터의 전국적 확충 및 민간의 마약류 중독자 입소시설 확대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외부망 시스템 고도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57억 7,5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자료를 제출함¹⁾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회재활정보 통합관리시스템(안)”은 마약류사범 교육의뢰 또는 민간 마약류 중독자 입소시설 이용자 관리 등의 유관기관과 기존 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하였으며, ISP 수립에 3억 3,000만원, 기존 시스템 고도화 5억 5,000만원(2024년 예산 배정), 유관기관 시스템 연동 및 이용시스템 구축비 11억원, 사이버 상담 시스템 구축비 9억 9,000만원 등을 책정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